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3
----------	-----

제출년월일 : 2008. 12.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속초시세감면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장애인 포함)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
(안 제2조, 제3조)

취득·등록·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자동차 1대만 자동차세 감면

나.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 (안 제8조, 제17조, 제28조)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 (안 제12조)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용 공동주택 재산세 50%감면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50%감면

라.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감면대상 구체화(안 제13조의 2)

사업용 부동산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조문 수정

마.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 (안 제20조)

바. 관련법령 명칭이 변경되고, 구체화된 법률적용을 위한 법조문 정비
(안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2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 「화물유통촉진법」 이 「물류정책기본법」 으로 법률명칭 변경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조, 제14조 (15쪽)
- 2) 「임대주택법」 제16조 (16쪽)
- 3)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17쪽)
-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18쪽)
- 5)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18쪽)
- 6)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18쪽)
- 7) 「주택법」 제1조, 제2조(19쪽)
-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19쪽)
- 9)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20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2008. 11. 12 ~ 12. 02)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행정자치부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 : 붙임 (22쪽)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 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17조제3호 및 제28조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은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본문중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본문중 “내지 제6호”를 “부터 제7호”로 한다.

제24조조목중 “유통산업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취득세등록 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_____.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_____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생략) 3. <u>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u> 4.~7 (생략)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1. ~2. (생략) ②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 (현행과 같음) 3 <u>국토해양부</u> ----- ----- 4.~7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u>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3조의 규정에 의한 ----- ----- ----- ----- ----- -----

현 행	개 정 안
의 주택으로서 <u>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u>을 얻은 <u>취락정비계획</u>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_____ <u>취락지구정비계획</u>_____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_____ <u>「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u>_____ 1. _____ <u>「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u>_____

현 행	개 정 안
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 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_____. 2. _____ _____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 -----. 3.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임대주택법」 제16 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_____ -----. 1. _____ 「임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현 행	개 정 안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2. _____ _____ _____ _____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 -----. 3. (현행과 같음)
<u>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u> ①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u>」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u>식품산업진흥법</u>」 제16조 및 「<u>수산물품질관리법</u>」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u>수도권정비계획법</u>」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u>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u>지방세법 시행규칙</u>」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	<u>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u> 「<u>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u>」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u>식품산업진흥법</u>」 제16조 및 「<u>수산물품질관리법</u>」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u>수도권정비계획법</u>」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13조의 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 2.(생략)	<u>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17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본문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교통부장관</u>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2. (생략)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u>내지 제6호</u>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u>화물유통촉진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 _____ _____ _____ _____ <u>국토해양부장관</u> _____ _____ _____ _____.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_____ _____ _____ (<u>주택을 제외한다</u>) _____ -----. 1. ~2. (현행과 같음)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_____ _____ _____ <u>부터 제7호</u> _____ _____ _____ -----. 제24조(<u>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u>) --- _____ 「<u>물류정책기본법</u>」 제2조 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_____ _____. 제28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교통부장관</u>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u>국토해양부장관</u> _____ _____ _____ _____.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감면조례 관련법

< 안 제11조 ②항 관련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 11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 관련 〉

○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등)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 안 제13조 관련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자금의 지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 안 제20조 관련 〉

○ 주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22조 관련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

〈 안 제24조 관련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종합물류정보망”이란 단위물류정보망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_____.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

현 행	개 정 안
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 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 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 의 주택으로서 <u>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u> 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 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 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취락지구정비계획</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 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 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 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 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 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 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 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 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u>임 대주택법</u>」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 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 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임 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제2항</u> _____ _____ _____ _____ ---. 1. _____ 「임대

현 행	개 정 안
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 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2. ----- ----- <u>재산세 및 도시</u> <u>계획세</u> -----. 3. (현행과 같음) ② ----- -----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1.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u>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략)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재산세</u> 및 <u>도시계획세</u> _____. 3. (현행과 같음)
제14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제14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u>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u><신 설></u>	<u>제14조의 2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u>

현 행	개 정 안
	<u>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u>

현 행	개 정 안
	<u>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18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 2.(생 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 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교 통부장관</u> 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 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_____ _____ _____ _____ <u>국토해 양부장관</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 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 산(<u>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u>)에 대하 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 를 경감한다. 1. ~2. (생 략)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_____ _____ _____ - <u>주택</u> _____ _____ -----. 1. ~2. (현행과 같음)
제23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 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한다.	제23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_____ _____ _____ <u>부터 제7호</u> _____ _____ _____ _____ -----.
제25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 세기준일 현재 「 <u>화물유통촉진법</u> 」 제	제25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_____ 「 <u>물류정책기본법</u> 」 제

현 행	개 정 안
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_____ _____.
제3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교통부장관</u> 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u>국토해양부</u> <u>장관</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